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72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 박홍근・이수진・민병덕

박상혁 • 이병진 • 진성준

한민수 · 이용우 · 남인순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 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채용과정에서의 신체적 조건, 가족정보 등의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 직자 본인의 성별·연령·용모·키·체중·임신여부·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종교·혼인여부·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가족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 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직자 본인의 성별・연령・용모・키・체중・임신여부・병력(病
 歴) 등의 신체적 조건
-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학력·출신학교·종교·혼인여부·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가족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	①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			
이 <u>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u>	- <u>다음 각 호의 사항</u>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 임신 또는 병			
<u>력(病歷) 등</u> (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			
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			
를 보장하여야 한다.			
<u><신 설></u>	1. 구직자 본인의 성별ㆍ연령ㆍ		
	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ㆍ		
	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u><신 설></u>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학		
	력・출신학교・종교・혼인여		
	<u>부·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u>		
<u><신 설></u>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		
	재산 등의 가족 정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